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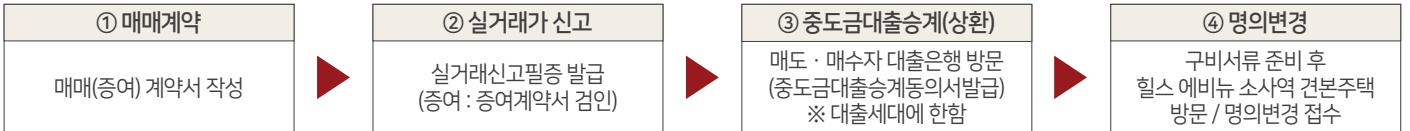
# 힐스 에비뉴 소사업 상업시설 명의변경(전매)안내



## ■ 명의변경 신청(사전예약 必)

전매일정	* 전매 개시일 : 2022년 7월 6일(수) ~ 7월 8일(금) 3일간 * 향후 일정 : 중도금대출 자서 이후 추후 공지(SMS 문자 안내)
전매장소	* 당사 건본주택(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22-46번지)
예약 및 문의	* ☎ 032-683-8075
비고	* 예약 및 접수시간 : 평일 오전 10시 ~ 11시30분, 오후 13시 ~16시 (점심시간 :12시 ~ 13시) ※ 주말 및 공휴일 제외

## ■ 전매절차



## ■ 전매 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
① 매매계약서 작성시		② 실거래신고시 (해당관청)	③ 재무 인수시 필요 서류 (해당 은행)	
매도인	계약서, 인감도장, 신분증	매매계약서, 신분증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발급, 계약서 검인(중여시) (해당 관청 신고 및 발급)	매도인	-
매수인	인감도장, 신분증		매수인	-

④ 최종 명의 변경시(힐스에비뉴 소사업 건본주택)			
구분	구비서류	매도인	매수인
1	공급계약서(원본)	공급계약서(원본)	-
2	신분증	매도인(계약자)본인 신분증(운전면허증, 여권 등)	매수인 본인 신분증(운전면허증, 여권 등)
3	주민등록등본 1부	1개월 내 발급본	1개월 내 발급본
4	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	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(1개월 내, 본인 발급본, 매수인 인적사항 명기)	인감증명서 1부 (1개월 내, 본인 발급본)
5	인감도장	매도인 인감도장	매수인 인감도장
6	소득증빙서류		- 직장인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년도), 재직증명서 - 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 - 법인 : 사업자 등록증, 국세 / 지방세 완납증명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매출액 분항가 이상, 매출 부가세 분항가 10%이상) - 통장 잔액 증명서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(年 재산세 확인)
	소득기준	[아래의 3가지 중 택 1] 1. 연소득이 분항가의(옵션가 포함) 10%이상인 자 (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시 : 매출금액 분항가 이상, 납부할 세액 분항가의 10%) 2. 통장 잔액이 분항가의(옵션가 포함) 10%이상인 자(해당월, 전월 잔액 증명서 제출) 3. 보유 부동산 재산세(본세 적용, 부가세제외)가 일정액 이상인 경우 예) 연 재산세 납부 금액 20만원 인 경우 소득수준 2천만원, 연 재산세 납부 금액 50만원 인 경우 소득수준 4천만원, 연 재산세 납부 금액 20만원 초과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술 평균하여 소득수준 산정 * 소득 기준 부족 시 통장잔액 증명서로 차액을 대신할 수 있음. * 명의 변경 시 부부합산 소득 가능.(배우자 소득합산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 * 위 3가지 소득자료 전부 합산 가능 * 해당년 사회 초년생은 해당년 월 급여액 X 12 를 연소득으로 간주(부모 소득 합산 가능, 가족관계증명서 필요)	
7	매매 - 부동산 매매 계약서	부동산 매매 계약서 1부	
8	매매 -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	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1부	
9	중여 - 중여계약서	중여 시, 중여계약서 검인 도장 날인본	
10	채무승계확인서 or 대출 상환 확인서	대출세대에 한함	
11	분양 대금 납부 명세서(명의변경 예약 시 요청)	명의변경 예약 시 요청	
12	전자수입인지 영수증 사본	(중여 해당 없음)	
13	명의변경 확인서(명의변경 장소 내 비치)	명의변경 장소 내 비치	
14	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	명의변경 장소 내 비치	
15	점포내 기동 존재 사실 확인서	명의변경 장소 내 비치	
대리인 방문시		대리불가	매수인 구비서류 1번~15번 동일하게 구비, 매수인 위임장 1부, 대리인 신분증 1부, 매수인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

- 1)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.
- 2) 매도인, 매수인 본인 방문 신청하고, 매도인은 대리인 접수가 불가합니다.
- 3) 매도인의 부재 : 재소자 - 교도관 날인 위임장  
해외거주 -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및 위임장(영사관 확인 必) 매도인사 확인 가능한 동영상(영상통화 등)
- 4) 계약서 뒤 '권리의무승계(명의변경)란 매도인, 매수인 자필작성 및 인감날인 必
- 5) 중도금 / 연체료 미납세대, 잔금완납세대는 명의 변경 불가합니다.
- 6) 금융기관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승계 후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.
- 7) 명의변경 완료 후 매도인 양도소득세 신고 必
- 8) 명의변경 완료 된 계약서는 매수인이 직접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수령, 우편수령불가

※ 대리인 방문 시 필요 서류  
· 매도인 - 본인 방문(대리인 불가)  
· 매수인 - 위임장 1부, 매수인 인감증명서 1부, 대리인 신분증  
※ 분양대금 완납 시 명의변경 불가